#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22

발의연월일: 2021. 7. 23.

발 의 자: 김선교·박대수·안병길

구자근・추경호・권성동

이종배 · 김석기 · 성일종

이철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하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집합건물 중 콘도의 경우에는 상시 주거공간이 아닌 필요시 이용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합건물보다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도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결의요건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 법률 제 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 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생 략)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2
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단서 신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
	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
	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 결의
	는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
	의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